

# 改正된 國立中央圖書館 職制에 對한 管見

曹 元 鎬  
(國立中央圖書館)

### 1

한 나라의 成文法體系를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그 나라가 지향해 가는 구체적 방향과 그 성격에 짐작이 가게 마련이다.

우리의 형편을 말할 때 자주 日本의 그것을 들어 얘기하는 것은 썩 비위에 맞는 일은 아니지만 「도서관」에 관하여 위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견주어 보면, 저들은 무려 50에 달하는 각종 법규가 도서관에 관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겨우 10을 넘지 못한다. 그 내용도 또한 불만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이런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도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얘기되어 오고 있는 터이다.

지금 여기에 문제 삼고자하는 國立中央圖書館職制라는 것도 우리의 저 가난한 도서관 관계 성문법규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이 금년 정월에 개정·공포된 것이다. 「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립중앙도서관」 직제로서는 처음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그 意義도 또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다. 한 나라의 「國家中央圖書館」이 갖출 面目과 內實 그리고 그 活動範圍와 性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제의 잘 잘못이 그 나라 도서관 전반의 消長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리라는 이치를 의심하는 도서관인은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도서관이 겪고 있는 모진 고민을 숙명처럼 체첩해 가고 있는 이른바 專門職司書의 입장에서 이번에 만들어진 중앙도서관의 직제를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몇 가지의 작은 문제들 외에도 한 두 가지가 슴 답답한 문제점에 맞닿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바로 이 문제점을 다소 구체적으로 診斷해 보려 한다.

### 2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묶음으로 나누어진다.

규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불합리한 조문들의 내용이 그 하나요, 그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받아 들이는 우리 도서관계의 태도가 그 둘이다.

이제 1967년 1월 25일에 大統領令 第2884號로 公布된 「國立中央圖書館職制」와, 「도서관」誌 115(67년 3월)호에 발표한 張一世님의 특집논문 「國立中央圖書館職制改編의 意義」를 바탕으로 하여 위의 두 가지 문제를 각각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매우 영성하게나마 이 나라에 圖書館法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4년전인 1963년 10월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특정적 기능」이 이 법에 의하여 비로소 주어진 것이다(제 16, 17조).

따라서 제대로 되자면 그 職制도 또한 지체 없이 마련되었어야 했던 것인데 3년이 넘는 세월을 「國家中央圖書館」인 국립중앙도서관에다가 하나의 公共圖書館인 「國立圖書館」의 직제를 그대로 써 온 소위 法令혼결의 狀態가 지속되어 온 데서 문제의 근본은 있어 왔다.

이 國立圖書館職制라는 것은 1949년 5월 6일 大統領令 第97號로 제정된 이래 이번에 國立中央圖書館職制로 대체되기 까지 전후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오던 것이다.

이러던 끝에 명분을 갖춘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가 드디어 만들어진 것은 그 지난날의 잘못과 또 그 내용의 여하를 따지기 전에 우선 반갑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안고서도 훗날의 成形을 위하여 지금 그것의 골보 자리를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우리의 강한 意志가 요구되는 것이다.

### 3

우선 여기에 분명히 해 두고 넘어 가야 할 것은, 이번의 職制가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것이라 하더라도 法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직제는 3년을 넘어 내 버려 두었던 事實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할 때 이번 職制(大統領令 第2884號·이하 「新令」으로 약칭한다)는 직작 만들어졌어야 했을 것이 이제야 겨우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新令 制定을 위하여 애 쓰신 분이냐 그 意義를 적게 평가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다만 정도를 지난 흥분은 필요

한 意志의 鈍化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新令 제정 이래 오늘까지 그것에 대한 유일한 공식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는 「國立中央圖書館職制改編의 意義」에서 그 筆者 張一世 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약하면, 『多幸히 關係機關들의 積極인 協助와 理解로써』 『過去 約 10年間 退步一路를 걸고 있던 우리 나라의 文化界가 이제 비로소 急進의 發展하고 있다는 뚜렷한 山 證據를 提示해 주었다는 데서 큰 意義가 있으며 『關係要路에 있는 여러분들이 圖書館이 社會教育機關으로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機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이와 같은 理解로 말미암아』 마련된 것이니 그 關係要路에게 『다시 한번 깊은』 謝意를 表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도 멀지 않아 先進國家에 못지않은 훌륭한 圖書館이 坊坊谷谷에 세워질 수 있다』는 『所感』마저 갖는다고 하였다.

아무리 뜬어 보아도 이는 좀 정도를 넘은 흥분이라고 할 밖에 없다.

## 4

다음은 館長의 地位가 新令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보자.

舊令 (57. 5. 31 개정, 大統領令 第1278호, 國立圖書館職制)에서 「行政副理事官」으로 補하던 것을 「行政理事官 또는 行政副理事官」으로 補하도록 하여 「약간이지만 명백히」 향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풀이할 때, 이 규정의 실질은 「향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行政副理事官으로 補하는 것은 여전히 合法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張一世 님은 『館長의 地位가 向上되었다』고 지적한 다음 『이것은 圖書館의 重要性이 점차로 널리 認定되고 있음을 證明한다. 그러나 아직 이것으로 滿足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外國의 例를 引用할 必要도 없이 적어도 長官 待遇가 되도록 앞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볼 적에는 위 규정이 무엇을 『證明』할만큼 실질적으로 향상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더러 바람직한 館長의 地位를 얘기하려면 『외국의 例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도서관을 아는 教育·文化界의 重鎮으로서 철저한 신분의 보장과 충분한 보수로, 적어도 안정된 나라의 대학교 총장급을 상회하는 예우를 받으면서 그 여생의 보람을 꽃피울 수 있는 別定職」 정도를 그리는 것이다. 결코 長官云云의 官僚의인 이미지를 앞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깊이 및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圖書館法이 국립

중앙도서관을 文敎部長官 소속 아래 두기로 한 외에 (16조 1항) 달리 아무런 배려도 베풀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그 下位의 執行命令인 大統領令의 「職制」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5

新令의 가장 큰 특색은 역시 중앙도서관의 機構가 현저히 늘어나고, 그 「특정적 기능」들이 드디어 明文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기구는 종전의 總務課·司書課·閱覽課의 셋에서, 庶務課·司書課·指導協力課 調査研究課·閱覽課의 다섯으로 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하나 지적해 둘 문제는, 司書課의 경우, 그것이 圖書館 機構 중의 한 課의 명칭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司書」라는 낱말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司書=圖書館人=圖書館專門職=Librarian, 곧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도서관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는데서 일어나는 것이다(도서관법을 비롯한 각종 관계법규 및 도서관 용어집 참조). 여기에, 도서관에는 「司書課에만 司書가 있느냐」 하는 소박하고 역설적이지만 대담에 궁한 의문이 따르는 것이다.

뒤에 좀 더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요컨대 司書課란 수서·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도서관업무 중의 技術的分野를 分掌하는 課라는 기본적인 태도에는 이번 新令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야라는 것은 도서관의 內外를 막론하고 우리 社會에 傳統의인 도서관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이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인식이 오늘까지 어떻게 수정되어 왔으며, 또 오늘과 오늘 이후 도서관과 사서의 일이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할 곳이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은 前記 張一世 님을 포함한 우리 도서관 및 그 학계의 비중 큰 일선 지도자들이 기 회 있을 때 마다 입을 모아 강조하는 터이고, 현대적 도서관학에 접촉한 모든 사람이 이제 의심하지 않는 형편에 이르렀다.

1949년 舊令이 제정되던 당시 司書는 「司書課」에만 있어도 좋다는 생각이 가령 용인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 新令의 「司書課」라는 것이 만약 다소라도 그런 사상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라면 『우리나라 文化界가 이제 비로소 急進의 發展하고 있다는 뚜렷한 山 證據』라고 하는 張一世 님의 言說은 하나의 僻見일 밖에 없다.

여하간 위와 같은 이치에 관한 인식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新令이 「司書」라는 말을 한 課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도무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張一世

넉게는 이 一見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그 핵심을 아주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주의했던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다.

6

이 문제와 관련하여, 各課의 「分掌事務」를 살펴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연스럽게 못하다는 것은 비능률적, 비체계적이어서 논리적으로 다소 難澁한 느낌이 있는 외에 조문의 字句 구성이 서툴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예컨대 『國家에 관한 文獻 및 圖書館資料의 選定·購入 및 蒐集』(6조 2항 1호) 『圖書館資料의 整理·分類 및 目錄作成』(동 2호) 등과 같이 세련되지 못한 文句가 적지 않다.

또 閱覽課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巡回·移動文庫의 運營』(9조 2항 2호)은 오히려 指導協力課가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各種刊行物の 發刊』(6조 2항 4호)과 『書誌의 作成』(동 6호)을 배놓은 (이것들은 司書課 소관으로 되어있다) 『圖書館資料의 調査·研究』(8조 2항 1호, 이것은 調査研究課의 主된 업무다)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圖書館學에 관한 調査·研究』(指導協力課 소관, 7조 2항 5호)와 『圖書館資料의 調査·研究』는 그 方法論에 있어서 반드시 兩者의 개념이 判異한 것인가. 『일반 참고업무』(閱覽課소관, 9조 2항 5호)와 『行政各部處에 대한 參考資料의 提供 및 기타 필요한 奉仕』(調査研究課, 8조 2항 2호)는 그 소관 課를 달리 할만큼 다른 일인가. 調査研究課의 봉사대상을 『行政』各部處로 못박은 것은 타당인가 등등의 문제는 일단 검토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張一世 님은 司書課의 소관 업무를 말하는 대목에서 그 『機能이 단순히 圖書의 蒐集이나 整理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든 몇 가지 업무가 첨가됨으로써 『대목 그의 概念이 달라진 點』을 지적하고 『社會生活의 複雜化로 인한 社會的인 要求의 多樣化에 응하기 위하여 의당 이와같은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圖書館에』가 아니고 『司書課에』 『의당』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7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調査研究課長을 『行政書記官』으로 補하게 한 新令 第8條 1項에 관해서 이다.

庶務課를 論外로 하고라도, 4개課 가운데 유독 조사연구과의 長을 『行政官』으로 補하는 까닭을 헤아릴 길이 없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도서관의 기능이 종래의 수집·정리·보존에서, 정밀한 文獻情報의 조직과 그 적극봉사의 쪽으로 移行되어 왔고, 實로 현대적 도서관학이 지시하는 소위 司書職의 專門性이라는 것도 이 새로운 도서관의 기능에서 그 영원한 生命源이 발견되는 것이다.

圖書館에, 「調査研究」라는 우리에게 낯선 課가 생겨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참고자료를 제공·봉사』 하겠다는 이른바 調査研究課가 어느만큼의 高度한 司書로서의 專門性을 요구하는 분야인가에 대해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물론 新令의 제정 과정에서 이런 사태를 빚게 된 禍를 알길 없다. 다만, 4課長 가운데의 어느 하나를 「行政官」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 실무자들의 불가피한 고충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調査研究課로 한 것은 그 소관 업무의 말미암을 때 버린 처사(6조 2항 4호, 6호 등등)와 더불어 참으로 本末을 顛倒한 일대 실책이었다.

그런데 張一世 님은 이점에 대하여 한 마디도 言及이 없다.

8

대체로 모든 規範은 그 나라 그 시대의 환경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新令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張一世 님의 반응에 언급해 왔는데, 그 불합리성에 대한 나의 지적이 다 그대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新令 그것은 오늘 이 나라 도서관이 서 있는 형편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新令 그 자체를 아주 못볼 것으로 거부한다든가, 또는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

稅法은 새로운 稅源과, 脫稅의 新技를 쫓아서 바쁘게 개정되어 가고, 선거를 치른 뒤에는 어김 없이 選舉法의 개정이 云謂되는 것은 다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規範(法令)이 역사적인 발전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는 일들이다.

도서관 전문직과 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社會一般의 번천·발전에 따라 도서관 관계 法規들도 倂연적으로 修正·補完되어 갈 것이다.

다만 이 때에, 우리가 주의해 마지 않아야 할 것은 그 修正·補完의 방향을 그 때 그 때의 현실에 입각하여 냉철한 의지로 명료히 제시하고 활발히 논의해 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점이다.

張一世 님은 안팎이 共認하는 우리 圖書館界의 重鎮 가운데 한 분이다. 따라서 그분의 한 마디는 나와 같

은 어린 司書의 백 마디가 따를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비중을 가졌다.

그런데 검토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간직한채 發效한 新습에 대한 이 분의 반응이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습 그 자체의 잘 잘못 보다 더 큰 문제점을 던지고 있고, 게다가 『數個月 동안 職制 改正案을 가지고 關係要路와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다』고 明言함으로써 이른바 『關係要路』에서 도서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실수라고 한 마디로 변명해 버릴 수도 또한 없는

형편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寂寞하리만큼 이상하게도 달리 아무런 반응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9

나는, 우리의 이 「寂寞」을 이기지 못하고, 또 위와 같은 張一世 님의 반응이 우리의 唯一, 그리고 全體的인 것으로 굳어져 버리는 사태를 걱정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學術活動의 열쇠 ! — 研究和 調查活動의 情報源 —

# 學術雜誌索引 1960

1960年度 國內에서 發刊된 學術雜誌 論文 10,240篇의 記事를 索引하여 收錄한 우리 나라 初有의 綜合的인 定期刊行物의 索引集이다.

<模造洋裝, 4·6倍版, 414面, 값 會員 800원, 一般 950원, 外國 12弗>

# 學術雜誌索引 1961~1962

1961~1962년에 國內 學術雜誌 353種에 發表된 19,282篇의 論文을 索引하여 著者名과 主題名을 가나다順으로 混合配列

<模造洋裝, 4·6倍版, 790面, 값 會員 2,000원, 一般 2,500원, 外國 20弗>

敎育機關, 各級學校, 會社, 圖書館, 研究機關, 學術研究家에게 必 偏의 圖書

注文接受 : 韓國圖書館協會(서울中區小公洞六)

配 本 : 注文書 接受 即時로 送付해 드립니다.

## 도협 일보 원고 모집

本報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음 과 같은 內容의 論文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消息, 其他 消息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
4. 其他 本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것

(磨勘은 每月 10日 限)

編 輯 室